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·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·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(2012.1.17)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 함(안 제12조2)

- **영업시간 제한은**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**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** 하고

- **의무휴업일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**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**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한다**

3. 참고사항

가. 관 계 법 령 : 붙임
나. 예 산 조 치 : 해당 없음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라. 입 법 예 고 : 2012. 3. 19 ~ 4. 9(22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.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·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.
2. 의무휴업일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4조의2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【 신 설 】	**【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】** 제14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 1. 영업시간 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. 2. 의무휴업일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이 봉 현
연락처	(033) 330 - 2540

관계법령 발췌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